#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81

발의연월일: 2020. 8. 4.

발 의 자:김영배·고민정·고용진

기동민 · 김민석 · 박광온

박완주 · 박재호 · 박홍근

서영교 · 양경숙 · 우원식

윤건영 • 윤영덕 • 이동주

이상민 • 이워택 • 이장섭

이해식 · 인재근 · 임호선

정일영 · 정태호 · 진성준

최혜영·한병도 의원

(2691)

## 제안이유

「경찰법」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경찰공무원의 신분, 임용, 복무,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경찰공무원의 임용, 교육훈련, 복무,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「국가

공무원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- 나.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규정하고, 임용권의 일부를 시·도 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.
- 다.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공무원을 삭제하고,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국가 수사본부장을 추가함(안 제10조).
- 라. 안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·도지사와 시·도자치 경찰위원회도 채용후보자 명부 및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 도록 함(안 제12조, 제17조).
- 마.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, 해양 경찰청,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, 시·도경찰청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 도록 함(안 제29조).
- 바.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, 관련 기구의 구성, 채용·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등 자치경찰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전부터 할 수 있음(안 부칙 제1조, 제2조).
- 사.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일에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함(안 부칙 제5조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268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##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경찰공무원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, 교육훈련, 복무(服務), 신분보 장 등에 관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임용"이란 신규채용·승진·전보·파견·휴직·직위해제·정직 ·강등·복직·면직·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.
- 2. "전보"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 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.
- 3. "복직"이란 휴직·직위해제 또는 정직(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)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계급 구분)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치안총감(治安總監)

치안정감(治安正監)

치안감(治安監)

경무관(警務官)

총경(總警)

경정(警正)

경감(警監)

경위(警衛)

경사(警杳)

경장(警長)

순경(巡警)

- 제4조(경과 구분)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(警科) 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.
  - ②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)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(人事)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("이하 인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
- 2.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7조(임용권자)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. 다만, 총경의 전보, 휴직, 직위해제, 강등,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.
  -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. 다만, 경정으로의 신규채용,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.
  -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, 시·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.
  -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경 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- ⑤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- 제8조(임용자격 및 결격사유)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(方正)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.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 - 1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  - 2. 「국적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
  - 3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- 5. 자격정지 이상의 형(刑)을 선고받은 사람
  - 6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- 7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

- 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행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
- 10.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
- 제9조(벌금형의 분리선고) 「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신규채용)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.
  -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(이하 "경찰간부후보생"이라 한다)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.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(이하 "경력경쟁채용시험"이라 한다)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

- 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
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(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
-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
  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
- 3.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 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
- 4.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舊「사법시험법」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
- 5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
- 6. 섬,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
- 7.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
- 8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
-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, 경력경쟁채용시험 및

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(이하 "경력경쟁채용시험등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,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,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,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1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- 제12조(채용후보자 명부 등)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(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(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,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(登載)하여야 한다.
  -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. 다만,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 순위에 따른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④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

대한 경우(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)의 의무복무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.

-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시보임용)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 년간 시보(試補)로 임용하고,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 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  - ② 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 -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8조 및 이 법 제26조에 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.
 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.
  - 1.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
  - 2.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

경우

- 3.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 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
- 제14조(승진)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, 경력평정, 그 밖의 능력을 실증(實證)하여 승진임용 한다. 다만,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.
  -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. 다만,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.
  - ③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④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,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근속승진)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, 경사, 경위,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.
  - 1.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: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
  - 2.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: 해당 계급에서 5년 이

상 근속자

- 3.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: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 월 이상 근속자
- 4.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: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
-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,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승진심사위원회)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, 경찰청·해양경찰청·시·도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·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(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)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·선발한다.
  -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·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승진후보자 명부 등)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(제7조제3

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제14조제2 항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 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 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

-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.
-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.
- 제18조(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)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. 다만,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.
 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  - 2.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
  - 3.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
-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19조(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)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이 실시한다. 다만,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

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, 시험방법,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보훈)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(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 및 부상(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)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 는 가족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.
- 제21조(교육훈련)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
  -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22조(거짓 보고 등의 금지)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(遺棄)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23조(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) 전시·사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, 경찰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·퇴각 또는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4조(복제 및 무기 휴대)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.
  -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.
  -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(服制)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(당연퇴직)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다만,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, 제8조제2항제6호는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,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」 제2조,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
및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 당한다.

- 제26조(직권면직)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 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 느 하나에 해당될 때
  - 2.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다고 인정될 때
  - 3.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
  - 4.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  - ② 제1항제2호·제3호 또는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- ③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이나 휴직 사유의 소멸일로 한다.
- 제27조(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

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,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
제28조(정년)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.

1. 연령정년: 60세

2. 계급정년

치안감: 4년

경무관: 6년

총경: 11년

경정: 14년

-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(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경찰공 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 의 계급정년으로 한다.
- 2.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.
- ③ 수사, 정보, 외사(外事),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·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총경·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.
-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 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(年數)를 산입한 다.
- 제29조(고충심사위원회)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, 해양경찰청,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, 시·도경찰청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.
  -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.
  -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,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30조(징계위원회)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.
  -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를 둔다.
  -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·관할·운영,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1조(징계의 절차)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,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. 다만, 파면·해임·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,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,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.
- 제32조(행정소송의 피고) 징계처분, 휴직처분, 면직처분,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

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.

- 제33조(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)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(實費)를 지급 한다.
- 제34조(「국가공무원법」과의 관계) 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「국가 공무원법」 제73조의4,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하며,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8 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② 「국가공무원법」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"직급"은 "계급"으로 본다.
  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2조제2항,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중 "인사 혁신처장"은 "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"으로 본다.
  - 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7조, 제68조,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,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"이 법"은 "이 법 및 「국가공무원법」"으로 본다.
  - 4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제3호 중 "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" 은 "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"으로 본다.
- 제35조(벌칙)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·사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.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에 처하며, 제22조제1항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
-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 살상의 위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제2 2조 또는 제23조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을 위반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-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, 그 죄에 대한 공 소시효의 기간은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으로 한다.
-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같은 법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)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, 관련 기구의 구성, 채용·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자치경찰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

전부터 할 수 있다.

- 제3조(종전 「경찰공무원법」 부칙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「경찰공무원법」 부칙 중 이 법 시행 당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법의 시행 후에도 해당 부칙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경찰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"을 "「경찰공무원법」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"으로 한다.

②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부터 제1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-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일에 그 계급에 상응하는 이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- 제6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경찰공무원법」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